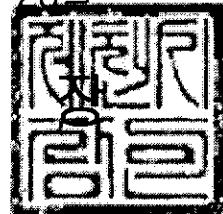


보상계획 열람공고

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「강원지역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(권원확보)사업(345kV 동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)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12월 23일

제천시



1. 사업명칭 : 345kV 동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
2. 사업시행자 : 한국전력공사 사장
3. 사업목적 :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,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.
4. 사업개요

가. 필지 수 : 515필지

5. 사업시행기간 : 2016년 1월 1일 ~ 2019년 12월(48개월간)

6.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강원도(동해시, 강릉시, 정선군, 평창군, 영월군), 충청북도(제천시) 일원
나. 면적 : 506,962㎡

7. 보상대상토지등의 명세

-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557-1, 산12-1, 554-1, 553, 552-7, 548-1, 555-1, 547-4, 509-1, 485-1, 491-2, 490, 489, 489-1, 488-15, 488-6, 1069-43, 475, 387, 384, 386, 388-4
- 충북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547, 546-1, 516-1, 517, 산59-1, 470-1, 산60, 산64, 475, 438, 439, 437, 436-2, 435-2, 412, 363, 362, 산76, 산81
-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489, 488-3, 496, 산94-5, 산94-3, 412, 414, 415, 416, 417, 423-1, 421-1, 379-1, 379-8, 379-7, 379-6, 379-5, 378-2, 367, 368, 371, 370, 341, 342, 342-1

8. 보상의 시기 :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

9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금산정 :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로 산정

나. 보상금 지급방법 :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

다. 보상절차 :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→감정평가→보상금액 통보→계약체결 및 권리설정→보상금 지급

10.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16.12.23. ~ 2017.01.22.(31일간)

나. 열람장소 :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송전운영부(☎033-259-2558)
제천시청 경제과(☎043-641-6643)

나. 이의신청 :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,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1. 기타사항

가. 감정평가업체 추천에 관한 사항 :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강원지역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보상금액 및 보상계약에 필요한 서류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개별통지(안내)합니다.

다.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, 소유자 및 관계인은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